

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8. 31.(금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의결 '라'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,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- 제4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4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
- 2012년 제46차 회의의 속기록을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⑥ 의결사항

가.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에 관한 건 - (2012-48-188)

-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출한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- ① MBC의 최근 5년간 광고매출에 대한 개별 지역MBC의 최근 5년간 광고매출 비율 유지를 통하여 지역MBC의 현행 수준 광고매출 보장 노력
- ② MBC, 지역MBC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지원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지역MBC에 대한 지원실적을 매월 점검

나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- 인성데이터(주) 등 8개 법인 - (2012-48-189)

-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의거, 8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적격 법인 : 허가심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6개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사업 신규허가 법인으로 선정
- 인성데이터(주), (주)루프, (주)에세텔, (주)큐텍코리아, (주)휴빌론, (주)이비
※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고,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 법인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
- ② 부적격 법인 : 2개 법인

다.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- (2012-48-190)

-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위원회 상정 안건 중 일상적·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인 4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서면결의 대상으로 추가된 안건 >

- ①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및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
- ② 방송심의 관련 과징금 처분 및 제재조치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건
- ③ 인증기관 등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간연장 건
- ④ 위원회 재정 등의 기간 연장 및 알선 위임 지정에 관한 건

라.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·이사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- (2012-48-191)

-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 이사 지원자 총 41명 중 20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한 2명을 신원조회 의뢰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로 의결함
- 한편, EBS 사장의 경우 지원자가 4명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면접 등의 심사 진행을 보류하고 연장 공모하되, 그 시기는 국회 일정, 대학수학능력시험일(11월 8일) 등을 감안하여 10월 중순 이후 2주간으로 하며, 연장 공모기간에 응모한 EBS 사장 지원자와 금번 지원자 4명을 포함하여 향후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함

㉞ 보고사항

가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,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 등 기업환경 개선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안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기업환경 개선

(1)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자격 개선

- 현재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을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어, 정보통신기술사 등 정보통신 관련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

(2)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원칙 허용 방식 전환

-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해 주도록 규정

(3)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예외

- 일시적 재정과탄 등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나 법원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

② 시장의 건전성 확보

(1) 저가 하도급 공사 방지

-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저가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

(2)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시·군·구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 부여

- 사용전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실 시공 방지

(3) 공사업의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 지정

-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원가산정과 공사업 중장기 육성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, 공익성심사제도 정비, 통계보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명확화·확대

-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‘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’로 명확화

·요금감면 서비스에 휴대인터넷(WiBro)을 추가하고, 무선호출은 제외

·장애인·유공자의 경우 유선전화(시내·시외·VoIP) 및 인터넷서비스의 감면 대상을 ‘수급자가 포함된 가구’로 확대

·차상위계층 요금감면 관련 「유아교육법」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,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‘13년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혜택 유지

②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

-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에 △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△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추가

·또한, 심사기준에 △외교·통상 정책과의 부합, △공정한 경쟁, △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, △법령 준수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

③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

- “경쟁상황 평가에 따라” 획정된 “단위시장”에서 시장점유율을 산정토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를 명확화

·서비스군(群)으로서의 “전기통신역무”와 개별 “서비스”를 명확히 구분

·규제대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, 해당 연도의 고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④ 기타 제도개선 등

(1) 통계보고 제도 개선

- 통계보고의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명시적으로 규정

(2) 번호안내서비스 개선

- 상호명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읍·면·동·도로명 단위 이하의 상세 주소를 번호안내서비스(114)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

(3)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 개선

-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에 상호·대표자 주소 변경 등 추가

(4)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 명확화

-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'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 하려는 경우'로 명확화

○ 향후 일정

-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: 2012. 9월 ~ 10월
- 위원회 의결 및 규제위·법제처 심사 : 2012. 10월 ~ 12월
- 차관회의·국무회의 상정 : 2013. 1월

다.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

-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사용기한이 '12.12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이용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(조치방안)

① 740~752MHz대역 무선마이크 생산·수입·판매중지

-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'13년부터 생산·수입·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고지하여 조기 판매중지를 유도('12.9월)하고, '13년부터 단속실시
- 주파수 사용기간 종료전이라도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파기기의 제조·판매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파법 개정추진('13년)

② 900MHz대역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확대

- 현재 900MHz대역 7MHz폭(925~932MHz)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.5MHz폭(925~937.5MHz)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공급

- 제조업체를 통해 740~752MHz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상판매를 권고('12년 하반기) 하여 무선마이크가 900MHz대역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유도

③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단속유예

- 740~752MHz대역 무선마이크는 '13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고 구매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('12.9월)
-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동 대역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할 때 까지는 동 대역 사용 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유예

8 기타

가. 기타사항

o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관련

- 국회 문방위(8.23)에서 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한 것에 대해 토론한 결과
- 학위를 수여한 단국대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김재우 이사장 본인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, 그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함

6. 폐 회 (15:10)